

『억울한 죽음』 가족이 원한풀어줄 의무있다

서울고법이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 가족권의 하나로 「신원권(伸冤權)」 개념을 최초로 제기해 대법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4일 차군의 아버지 朴正基씨 등 5명과 5명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姜致昌 당시 치안본부장 등이 차

朴鍾哲군致死 『伸冤權』첫제기

군의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한 것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할 「신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진상은폐」부분에 대한 국가 등의 민사상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텔리』로 맺어져 고락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서 가족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진상은폐 國家 민사책임” 大法院서 수용여부 관심

법정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죽음을 당한 가족의 내부 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침해해서는 안 될 권리인 「신원권」이라 정의한다』고 판시했다.

차군 고문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고문치사와 진상은폐에 대한 책임 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진상은폐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외에 민사책임도 물을 수

서울高法 損賠訴 항소심 1億7千만원 배상판결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왔다.

1심에서는 진상은폐에 대한 책임이로 위자료 2천8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법률전문가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배상액수에 대해선 『국가와 고문경찰 등은 차군의 죽음에 1억7천여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89년 1월 1일 배상판결보다 4천여만원 늘어난 것이다.